제정 2005. 12. 31 조례 제 786호 개정 2006. 4. 12 조례 제 801호(법무행정 처리 조례) 개정 2008. 10. 8 조례 제 957호(법무행정 처리 조례) 일부개정 2011. 1. 11 조례 제1134호(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 또는 용인시장(「지방자치법」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)과 관련하여 주민소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08. 10. 8〉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주민소송"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지역주민 이 자기의 권리·이익에 관계없이 주민 자격으로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.
- 2. "재무회계행위"라 함은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여 수행하는 회계적 기록·계산을 총칭하며 그 유형으로는 다음 각목과 같다.
  - 가. 공금의 지출(지출원인행위, 지급명령 또는 지출을 포함)
  - 나.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
  - 다. 용인시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·임차·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· 이행
  - 라.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·징수의 해태
- 3. "공금"이라 함은 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지 그 기관이 관리하는 현금·「증권거래법」제2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.
- 4. "재산"이라 함은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규정한 공유재산, 물품, 채권·채무, 공공시설 및 기금 등을 말한다.

- 제3조(감사청구전치주의) ① 「지방자치법」제17조의 주민소송을 제기고자하는 자는「지방자치법」제16조의 주민의 감사청구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.〈개정 2008. 10. 8〉
  - ② 주민의 감사청구인의 수는 「지방자치법」제16조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「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 〈개정 2008. 10. 8〉
  - ③ 주민의 감사청구인의 자격은 19세 이상의 「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(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)이 감사를 청구하여 한다. 다만, 외국인, 법인 및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인의 자격은 부여하지 아니한다. 〈개정 2006. 4. 12〉
  - ④ 용인시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 감사청구를 경기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.
  - ⑤ 제3항의 주민의 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.
  - ⑥ 경기도지사는 주민의 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표자에 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 - ⑦ 경기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중인 사실과 감사 종료 후 그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당해 기관에도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한다.
  - ⑧ 경기도지사는 주민의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,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용인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간 내에 감사를 종료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용인시장에게 통

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.

- ⑨ 용인시장은 경기도지사로부터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, 그 조치결과를 용인시의회와 경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① 경기도지사는 용인시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조례의 제정이나 개폐"를 "감사"로,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은 "경기도지사"로 본다. 〈개정 2006. 4. 12, 2008. 10. 8〉
- 제4조(주민소송의 제기) ① 주민의 감사청구 사항이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민소송 제기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, 주민의 감사청구를 거친 자는 1인도 주민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.
  - ② 주민소송 제기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. <개정 2008, 10, 8>
  - 1. 경기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(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 료된 날을 말한다)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아니 한 경우
  - 2. 「지방자치법」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또는 「지방 자치법」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
  - 3. 「지방자치법」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지사의 조치요구에 용 인시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  - 4. 「지방자치법」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장의 이행조치에 불복 이 있는 경우
- 제5조(주민소송의 피고적격) ① 주민소송은 용인시장 또는 당해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속기관(용인시의회 사무국을 포함)의 장을 피고로 한다. 다만, 용인도시공사 또는 용인시의회 및 용인시의회 의원은

직접적인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. 〈개정 2011. 1. 11〉

제6조(주민소송의 유형) 주민소송의 청구유형으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중지청구소송
  - 가. 당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.
  - 나. 중지청구소송은 당해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.
  - 다. 「행정소송법」의 집행정지와는 다르게 당해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허용되는 구제제도를 말한다.
- 2.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
  - 가.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.
- 3.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소송
  - 가.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.
  - 나. 해태사실은 일정한 신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법률과 조례 등에 의하여 특정되는 재무회계상의 작위행위를 게을리 한 경우를 의미하고, 해태사실은 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 존재하여야 한다.
- 4. 손해배상청구,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변상명령청구소송
  - 가. 당해 용인시장 및 그 직원, 용인시의회 의원, 당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. 다만, 용인시 직원이「지방재정법」또는「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.
  - 나.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해 당

사자에게 그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할 당사자가 용인시장인 경우에는 용인시 의회의장이 그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.

- 다. 용인시는 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청구를 받은 자가 동호동 목의 기한 이내에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 하지 아 니한 때에는 손해배상·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그 소송의 상대방이 용인시장인 경우에는 용인시의회의장이 용인시를 대표한다.
- 라. 제4호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 변상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한으로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.
- 마. 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자가 동호동목의 기한 이내에 변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- 바. 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다만,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. 제7조(주민소송의 제소기간)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.
  - 1.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: 당해 60일이 종료된 날(제3조제8항의 단서규정 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)
  - 2. 제4조제2항제2호의 경우 : 당해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
  - 3. 제4조제2항제3호의 경우 : 당해 조치요구시 지정한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
  - 4. 제4조제2항제4호의 경우 : 당해 이행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
  - ② 제6조 각 호의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다른 주민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

- 제8조(주민소송의 중단 및 수계) ①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 이 사망하거나「지방자치법」제12조에 의한 주민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.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용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(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)의 관할로 한다.
  -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수계의 방법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법원은 감사청구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있고,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는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.
  - ④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(受繼)할 수 있다. 이 기간이내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소송절차는 종료된다.
- 제9조(주민소송의 고지 등) ① 용인시장은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용인시 직원·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②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용인시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당해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「민법」제1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본다.
  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종료된 날부터 6월이내에 재판상 청구, 파산절차참가, 압류 또는 가압류,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.
- 제10조(주민소송의 참가) 국가,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.
- 제11조(당사자의 처분권 제한)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

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,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. 이 경우, 법원은 허가하기 이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, 통지한 때부터 1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.

- 제12조(주민소송의 소가)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.
- 제13조(주민소송의 실비보상청구권)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(일부 승소를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 용인시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,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, 그밖에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, 용인시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객관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주민소송의 적용례) 주민소송은 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진 감사청구분부터 이를 적용한다.

부칙 〈2006. 4. 12 조례 제801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〉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생략

부칙 〈2008. 10. 8 조례 제957호, 법무행정 처리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용인시 주민소송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5제1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5"를 "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"로,

"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4"를 "「지방자치법」제16조"로 한다.

제3조제2항중 "「지방자치법」제13조의4"를 "「지방자치법」제16조"로 한다. 제3조제11항 중 "「지방자치법」제13조의3제2항 내지 제6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"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"「지방자치법」제13조의4제3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3항"으로 하고, 제2호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4제3항 및 제4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3항 및 제4항"으로 하며 "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4제6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6항"으로 하고, 제3호 및 제4호의 "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6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6항"으로 한다.

⑦ 부터 ② 까지 생략

부칙〈2011. 1. 11 조례 제1134호,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내지 제5조는 용인지방공사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의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용인시 주민소송 운영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용인시 지방공사·시설관리공단"을 "용인도시공사"로 한다. ② 부터 ⑤ 까지 생략

제5조 및 제6조 생략